

문서번호	건강관리과-103808
결재일자	2015.8.11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동작구청장 방침 제66호

주 무 관	건 강 증 진 장	건 강 관 리 과	동 작 구 보 장 소	부 구 청 장	동 작 구 청 장
구나현	이부자	정남숙	代김연순	정연찬	08/11 이창우
협 조	규 제 개 혁 팀 장		강성문		
	주 무 관		代김미선		
	보 건 기 획 과 장		김연순		

##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폐지 계획



**보 건 소**  
**건 강 관 리 과**



#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폐지 계획

기능이 유사하고 중복회원이 존재하는 두 단체의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함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

## I 추진근거

- ☐ **건강생활실천협의회 ·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통합(안)** [구청장 방침 제(58)호, ('15.08.05)]
  - 위원회 통합 위해 위원회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정비(폐지) 추진

### 건강생활실천협의회 ·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통합 추진경과

- **지역보건법 제 6조 개정 ('15. 5. 18)**
  -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유사위원회를 통합 가능하도록 지역보건법 개정
- **두 위원회 통합(안) 마련을 위한 사전준비 ('15. 7월)**
  - 두 위원회 위원 구성현황 분석 및 문제점 파악, 유사기능 확인
- **건강생활실천협의회·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통합(안)마련 ('15. 8. 5)**
  - 구민건강증진 계획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합 추진 결정

## II

### 조례 폐지(안) 개요

- 폐지대상 :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<sup>1)</sup>
- 폐지사유
  -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존치 실익 없음
- 주요내용 : 『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』 폐지

## III

### 행정영향 분석

- 통합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『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』를 근거로 구성·운영함에 따라
-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·운영 근거였던 『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』는 자치법규의 중복입안으로 법령의 체계성을 저해하는 바, 존치실익이 없는 조례를 정비(폐지)하여 자치법규 입법 체계성 확보

## IV

### 추진일정

- 입법예고 : 2015. 8월 ~ 9월 (※ 기간 중 20일 이상)
- 조례규칙 심의 : 2015. 9월 중
- 의회상정 : 2015. 10월 중
- 공 포 : 2015. 11월 중

붙 임 :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폐지조례(안) 1부. 끝.

1)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된 조례 (‘1996.6.12 제정)